10. 열 공 급 규 정
(한국지역난방공사)

(1990년 6월 1일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급자"라 합니다)가 일반의 수용에 대하여 열을 공급할 때의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구역) 이 규정은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에 적용하며 세부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공급자가 비치합니다.

제3조(규정의 인가 및 변경) ①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②공급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3조의2에 의한 명령에 따라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금 및 기타의 공급조건등은 변경된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공급자는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규정이외의 요금 및 기타의 공급조건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매체"라 함은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합니다.
2. "열발생처"라 함은 열발생기기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하는 곳을 말합니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열발생처에서 생산된 열매체를 수용가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로, 공동구 등에 부설하는 열발생처로부터 사용관과 접속되는 지점까지의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4. "사용관"이라 함은 수용가가 공급관과 접속되는 지점으로부터 열매체를 받기 위하여 부설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5. "공급시설"이라 함은 열발생처, 공급관, 공급관의 부속기기 등 열공급에 필요한

공급자 소유의 제시설을 말합니다.

6. "수용가시설"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사용관의 부속기기 등 열사용에 필요한 수용가 소유시설 및 수용가 공유의 제시설을 말합니다.
7. "계량기"라 함은 열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산정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수용가 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거래용 열량계(유량부, 적산부 또는 온도감지기등)를 말합니다.
8. "수용가"라 함은 열수용신청을 하여 공급자와 열수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9. "1수용장소"라 함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1단지, 빌딩의 경우는 1건물을 말합니다.

제2장 수용신청과 수급계약

제6조(수용신청) ①새로이 열을 사용(계약폐지후 1년이상 경과후 다시 수용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고자 하거나 열의 증설사용, 재사용 또는 변경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용신청자"라 합니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의한 수용신청은 공급자의 공급시설 및 사용관의 공사시기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후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의 공동명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명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빌딩: 빌딩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구분 표시하여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또는 열요금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보증을 받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사용자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사용차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인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공급승락) ①공급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신청이 있을 경우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열의 공급을 승락하여야 합니다.

②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용신청서 접수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될 때
2. 열공급 시설 및 수용가 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수용신청 내용이 전체 수용가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다만, 공급자와 해당 수용가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불이익을 신청 수용가가 해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이 규정이외의 조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때

③공급자는 제2항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제8조(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계약기간) ① 수급계약은 수용신청자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을 승락하고 사용내용을 협의 결정한 후 공급자 소정양식의 열수급계약서에 합의된 수용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수용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2. 공사비부담금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납부
3. 열요금, 기타 체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납부
4. 수용가 시설의 점검결과, 수용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

②수급계약 기간은 수급계약 또는 그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③수급계약 기간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가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수급계약기관 만료전에 수급계약의 폐지 또는 변경이 없거나 계약내용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수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⑤제6조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청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개별 입주자, 사용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열수급계약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한 빌딩대표자가 다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조(명의의 변경) ①매매, 임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수용가는 전수용가의 공급자에 대한 열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

고, 계속 열의 공급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경질은 수용가의 변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공급자는 신수용가로부터 명의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신수용가가 전수용가의 공급자에 대한 열사용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수용가 신청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 ①수용가가 열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지희망일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수용가의 폐지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수용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신청을 미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되는 날에 수급계약이 폐지됩니다.

③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폐지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에 수급계약이 폐지됩니다.

제11조(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 ①공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수용가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수급계약을 폐지합니다.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아니한 수용가로서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져 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급계약이 즉시 폐지됩니다.

제12조(수급계약 폐지후의 채권 채무 등) ①수용가와 관련된 열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열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수용가의 열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신수용가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 및 공급자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공급자는 수급계약 폐지이후에도 기설치된 공급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사용장소내에 계속 존치할 수 있습니다.

④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된 경우 해당 수용가가 수급계약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용장소에서 열공급을 다시 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계약 폐지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수급계약체결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공 급

제13조(공급기간) 수용가에 대한 열공급은 기간의 제한없이 연중 계속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4조(공급시간) 공급자는 공급기간중 수용가에게 시간의 제한 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급자는 하절기에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공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공급조건) 공급자의 수용가에 대한 공급조건은 다음 각호와같습니다.

1. 열매체 온도는 공급자와 수용가 설비의 접속점 또는 가장 인접한 공급관의 계측 가능 지점에서 30분간 측정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온 도
온 수	공 급 온 도	75℃−115℃
	회 수 온 도	40℃− 65℃

2. 압력은 이용장소에서 30분간 10분 간격으로 측정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압 력
온 수	공 급 관	16kg/cm² 이하
	회 수 관	16kg/cm² 이하

3. 저부하로 되는 시간대에는 수용가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 2호의 온도 및 압력 이외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공급개시) ①공급자는 수급계약이 체결된 수용가에 대하여 수용가 시설의 점검, 기타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후 수용가와 협의 결정한 수급개시예정일에 열을 공급합니다.

②공급자의 책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용가와 협의 결정한 수급개시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수용가에게 통지하고 수용가와 협의하여 다시 수급개시 예정일을 정합니다.

제17조(공급의 단위) 공급자는 1수용신청에 대해서 1수급계약으로 열을 공급합니다. 다만, 1수용장소에 계약종별이 서로 다른 사용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각개의 계약종별을 1수급계약으로 하여 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위약처리) ①수용가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열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용가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니 아니할 때에는 6월이내에서 공급자가 결정합니다.

②제1항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1. 공급자 또는 수용가 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2.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열사용 시설을 신설 사용하였을 때: 무단으로 신설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
3.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하였을 때: 무단으로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열요금 산정액과 그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4. 계약된 계약종별 이외의 열을 사용하였을 때: 실제 해당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기계약된 계약종별에 의하여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③수용가가 수급계약의 폐지, 열공급의 중지 또는 정지를 위한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후 부정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1. 봉인파손: 30,000원
2. 부정사용: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위약금

제19조(재산한계점) ①공급자와 수용가의 재산한계점은 수용가 부지내의 공급자측의 최초 차단밸브의 수용가측 단말로 합니다.

②재산한계점까지의 공급시설은 공급자 소유로 하고, 재산한계점 이후의 시설은 수용가 소유로 하여 각각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수용가기계실에 설치된 계량기 및 신호전송장치와 그 부속설비는 공급자 소유로 합니다.

제20조(공급의 정지) ①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수용가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5일전에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2. 수용가가 수용장소내에 있는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공급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수용가 시설 또는 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수용가가 열요금을 연체납기일로부터 7일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선 등을 요구하였을 때 수용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보안상 문제 발생이 예상될 경우

②수용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공급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용가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장소의 출입 및 필요한 장소의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제21조(공급정지의 해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당한 수용가가 수급계약이 폐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공급자에 대한 열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타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2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의 수급상황에 심한 불균형 또는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공급자의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열공급 시설의 수선, 변경, 기타 공사상 열공급이 불가능할 때
5.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때
6. 기타 보안상 부득이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수용가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손해배상의 면책)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계약을 폐지하였을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
4. 공급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24조(사용장소의 출입등)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용가의 동의를 받아 수용가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급시설의 시공, 개수 또는 순시 및 점검을 할 때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가시설을 점검할 때
3. 계량기의 검침 또는 검사를 할 때
4. 제10조, 제11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제4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5조(공사의 시공) ①공급시설에 관한 공사는 공급자가 시공합니다.

②수용가 시설에 관한 공사는 수용가가 시공합니다.

③공급시설과 수용가 시설의 접속은 공급자의 입회하에 수용가가 시공합니다.

④수용가 시설을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정업체라야 합니다.

제26조(계량기의 설치 및 검사) ①열요금 계산에 필요한 계량기와 그 부속장치는 공급자부담으로 공급자가 시설하고 소유합니다.

②계량기 및 동 부속장치의 시험, 점검 및 수리는 공급자 부담으로 공급자가 취급합니다. 다만, 수용가의 요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검사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하나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법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수용가의 요청에 의한 검사를 행할 경우에는 수용가 또는 그 대리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는 수용가에게 통지합니다.

③계량기의 부설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또한 검침 및 검사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로서 공급자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가와 협의합니다.

④수용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거래용 계량기 이후에 별도로 수용가 부담으로 수용가용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계량기에 필요한 전원은 수용가가 공급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⑥공급자는 수용가 소유 열량계(유량계 포함)의 검증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검증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제27조(수용가시설의 공사) ①수용가는 수용가시설의 설계, 시공에 관하여 공급자와 협의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공급자는 수용가시설의 공사중 또는 준공후라도 수용가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③공급자는 제2항의 점검결과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수선, 개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공사비 등의 부담) ①공급시설의 공사비는 공급자와 수용가가 부담하고, 수용가시설의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수용가가 부담하는 공급시설의 공사비는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②수용가의 사정에 의하여 기 설치된 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하고 설치후 동 시설을 공급자 소유로 합니다.

③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급계약의 폐지와 제20조에 의한 공급정지후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제29조(공사비 부담금) ①수용신청자는 제28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비부담금으로 건축연면적 m^2당 별표 1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용신청후 또는 계약후에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수용신청에 의한 공급자의 시설공사비가 공사비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②공사비부담금은 해당공사 착공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체의 분양 및 대금징수비율에 관계없이 총공사비부담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의거 승인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입주금 납부비율)을 곱한 금액을 입주자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은행영업일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본조 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정하는 별도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공사비부담금을 지정기일까지 미납시에는 지정기일 익일부터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0조(시설관리비 등의 부담) ①공급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수용가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②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공급시설을 멸실, 파손 또는 훼손케 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용가로부터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요 금

제31조(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①열요금은 열의 수급계약에 의거, 열의 수금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②수용가가 수급개시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개시 예정일 7일전에 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계약에 의한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수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기본요금의 30%를 열요금으로 적용합니다.

④제2항에 의한 연기기간은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시는 상기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2조(요금의 계산) ①수용가가 납부하는 요금은 별표2의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②기본요금은 열사용에 관계없이 매월 별표2의 요금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③사용요금의 제36조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열량에 따라 매월 별표2의 요금표에 하여 계산합니다.

제33조(검침일) 검침은 각 수용가별로 공급자가 미리 정한 날(이하 "정기검침일"이라 합니다)에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상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검침방법) ①공급자는 수용가의 입회하에 계량기를 검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계량기의 검침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합니다. 이 경우 숫자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하의의 수로 합니다.

제35조(계산기간) 요금은 전월의 정기검침일 이후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이라 합니다)마다 계산하며 일할 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침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열의 공급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급계약이 폐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 이후부터 폐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요금을 계산합니다.

제36조(사용 열량의 산정) ①사용 열량의 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량기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 열량으로 합니다. 다만, 1수급계약에 여러개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각개 계량기의 사용열량 합산을 사용량으로 합니다.

②매월의 사용열량은 당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에서 전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제37조(열사용량의 협정) ①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기간중의 열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중 가장 적합한 한 가지 방법을 수용가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각 기간중의 외기온도를 감안할 수 있습니다.

1. 전년 동월 또는 전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text{사용량} = \frac{\text{전년 동월 또는 전월의 실사용량}}{\text{전년 동월 또는 전월의 실사용일수}} \times \text{대상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후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text{사용량} = \frac{\text{교환 또는 수리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량}}{\text{교환 또는 수리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 \times \text{대상일수}$$

다만, 그 검침기간중에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의 실적이 10일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의하는 방법:

사용량=사용설비용량(Kcal/h)×1일 사용시간×대상일수

4. 단위 난방면적당 열소비량 계산에 의하는 방법:

$$\text{사용량} = \text{난방면적}(m^2) \times \text{단위 난방면적당 연간 열소비량}(Gcal/m^2) \times \text{해당월의 소비비율} \times \frac{\text{대상 일수}}{\text{월력에 의한 해당월의 일수}}$$

5. 제26조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의하는 방법:

$$\text{사용량} = \frac{\text{계량된 사용량}}{100\% + (\pm\text{오차율})} \times 100\%$$

이 경우 조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가의 신고일 또는 공급자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합니다.

6. 봉인기간중 적산된 열량의 조정:

수용가 기계실의 봉인기간중 적산된 열량은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고 열사용 사실이 없음을 공급자가 인정하는 경우 적산된 열량을 조정합니다.

제38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청구) ①수용가의 요금납부 의무는 검침일에 발생합니다.

②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 발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공급자가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수용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일(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된 요금은 납기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이하 "연체납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공급자는 요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납기일 20일 전까지 발급하며 납기일 이후에 받았음을 공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납기일로 합니다.

⑤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급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해장 수용가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⑥수용가는 납기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청구된 요금("연체료 "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수용가가 열요금(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중 일부는 납부할 때에는 "지불의무 발생일" 확정순위에 따라 차례로 갚은 것으로 합니다.

제39조(요금의 계산착오 등에 대한 시정) ①요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용가는 납기일 1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 규정의 기간내의 이의제기 등으로 요금 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요금에서 정정하여 납기일을 최소한 20일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청구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후 수용가가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요금 적용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요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40조(보증금) ①공급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의 정지를 당한 일이 있는 수용가등 요금지불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공급의 개시나, 재공급의 조건으로써 열공급개시일이 포함된 월과 그 이후 2개월 등 총 3개월분 예상 월액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 또는 공급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지급보증서 등(이하 "보증증서"라 합니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금 또는 보증증서의 예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예치 또는 보증기간 중 열요금을 연체납기일까지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예치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수급계약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제41조(일할 계산) ①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금에 대하여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1. 열의 수급개시 또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경우

2. 계약종별, 요금이 변경된 경우

3. 실제 검침일이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3일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4. 정기검침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 때에 중지 또는 제한이 연속하는 24시간을 1일로 하고, 1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②공급자가 일할 계산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중간검침을 합니다.

③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 개시 또는 변경일은 포함하고 증지 및 폐지일은 제외합니다.

④기본요금의 일할계산의 방법은 기본요금의 월액에 사용일수를 곱하여 그 월의 월력에 의한 일수를 나눈 것으로 합니다.

제42조(계산결과의 끝수처리) ①공급자는 요금, 공사비부담금 등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②공급자는 주택용 계약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업무용 및 공공용의 계약용량 산정시에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이 경우 면적의 단위는 m^2이며, 용량의 단위는 Mcal/Hr입니다.

제43조(계약종별 분류기준) 계약종별은 주된 열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3과 같이 분류합니다.

제6장 수용가 시설 및 수용가 의무

제44조(수용가 시설기준 등) 수용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①2차측(수용가난방수) 온도

공급온도: 60℃, 회수온도: 45℃−40℃

(온돌난방의 경우: 공급, 회수온도치 15℃)

(대류난방의 경우: 공급, 회수온도차 20℃)

②단위난방부하

건물용도	단위난방부하(Kcal/m²·Hr)
단독주택	63
아파트	49
상가	100
업무용	86
공공용	86
호텔	94
병원	105
학교	89
극장, 집회소	145
목욕탕	110

③난방제어기기

외기온도 보상조절기를 설치하여 2차측 난방공급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어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일별, 요일별, 시간별의 입력기능을 구비한 제품이 바람직합니다).

④팽창탱크

밀폐식 팽창탱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급탕 열교환기 시스템 구성

저탕조가 없는 순간가열 시스팀으로 하여야 하며 급탕 과부하시 난방용 콘트롤밸브 순간차단 기능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⑥급탕량 산정

아파트 급탕 가열량 산정은 다음의 공식을 적용합니다.

$q=(36+9\sqrt{4N-2})\times 0.8$

q: 가열유량, Lit/Min

N: 세대수

⑦1차측 차압조절밸브(PDCV)

공급 및 회수관측의 차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45조(수용가의 의무) ①수용가는 수용가 시설을 사용 관리함에 있어 공급시설이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공급자는 수용가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수용가는 제19조제2항의 단서에 규정한 설비 등 수용가 구내에 설치되는 공급설비 운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 전력비(계량기에 소요되는 전력은 제외)는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공급자가 부담하게 될 전력비의 산출 및 부담 방법은 수용가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④수용가는 공급자가 열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46조(손해배상 의무) 수용가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가 의무를 해태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비용 등 공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7장 보 안

제47조(보안책임) ①공급시설은 공급자가 보안의 책임을 지고 수용가 시설은 수용가가 보안책임을 집니다.

②공급자와 수용가의 보안 및 유지보수 책임 한계점은 원칙적으로 재산한계점과 일치합니다.

제48조(통보 등) ①공급자는 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사태가 발생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수용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수용가는 수용가 소유의 시설에 누수, 온도, 압력 등이 이상 사태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속히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수용가가 수용가 소유인 시설의 수선, 개조 등을 할 때에 열의 수급에 지장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미리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9조(수용가 시설의 개선) 공급자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가 소유의 시설에 대하여 수선, 철거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수용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8장 기 타

제50조(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수용가는 그의 사용장소내에서 열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51조(문서의 기록 및 보존) ①열공급과 관련된 제반분서 중 공급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합니다.

②공급자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52조(규정의 공표 및 비치의무) 공급자는 본 규정을 인가받거나 규정이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용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출장소, 사업소 등 보기 쉬운 곳에 10일 이상 게시하고 공급자의 해당부서에 비치하여 수용가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53조(위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및 별지 각 양식은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공급자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열요금표 등)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열요금표)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계약종별)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합니다.

제3조(경과조치) ①1986.12.31 이전에 준공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이전에 열수용을 신청한 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의 수용가의 기계실 개조공사는 공급자가 그 공사비를 조달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9조제2항에 의한 공급자 소유의 시설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수용가 소유의 시설은 수용가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수용가는 그 공사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상환

할 시에는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기타 이 규정 시행전에 처리된 열공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열공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봅니다.

②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관공서로서 열수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공동주택으로부터 열공급을 받아온 곳은 공동주택과 1수급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1987.12.31 이전에 수용신청을 하여 기계실내에 차단발브가 설치된 수용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재산한계점을 기계실내 최초차단발브의 수용가측 단말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이미 발생된 신도시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은 이 규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정하는 일자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1

공사비부담금

주택용: 건축연면적 m^2당 6,700원(부가가치세 별도)

별표 2

요 금 표

(남서울지역)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 종별	기 본 요 금	사 용 량 요 금
주 택 용	계약면적 m^2당 25원 23전	100Mcal당 1,480원
업 무 용	열교환기용량 1Mcal/hr당 206원 82전	100Mcal당 2,261원
공 공 용	열교환기용량 1Mcal/hr당 186원 15전	100Mcal당 1,952원

주)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에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하실·보일러실·기계실·변전실·옥탑·옥외경비실·옥외공중화장실은 제외함. 단, 계약면적에서 제외한 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합산함.

별표 3

계약종별 분류표

구 분	내 용
주 택 용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수용
업 무 용	○ 주택용 및 공공용 이외의 수용
공 공 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법 제81조 및 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다만, 지역난방 공급이전부터 기존 아파트로부터 난방열을 공급받고 있던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교육기관의 사용량 요금은 주택용 적용 ○ 농촌진흥법 제5조에 의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농민 교육기관